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5. ~ 10.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제3534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박혜정 · 김미애 의원

1. 제안이유

- 순천시 소재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순천시 교육 정책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로 개정
- 지원 대상 확대(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화(안 제5조)
-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조항 신설(안 제6조)
- 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발전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5. “교육사업시행자”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7. “교육협치”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보조금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과 학생 및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소요되는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한 교육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6.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
2. 학생회,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순천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3. 순천시 관련 공무원 3명
4. 교육 전문가 3명
5. 유, 초, 중, 고 학부모 대표 각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5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4조(교육발전사업 추진방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순천시 소재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

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illegible]

- 비용발생 요인 :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 등
-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사업시행자가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계획
- 교육발전보조금 사업계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36,500,000	7,100,000	7,200,000	7,300,000	7,400,000	7,500,000
세입(a)		—	—	—	—	—
세출(b)	36,500,000	7,100,000	7,200,000	7,300,000	7,400,000	7,500,000

※ 세입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36,500,000	7,100,000	7,200,000	7,300,000	7,400,000	7,500,000
시 비	36,500,000	7,100,000	7,200,000	7,300,000	7,400,000	7,5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지급기간 : 2022. 1.~ 12.
- 금 액 : 7,100,000천원
 - 교육경비 70억(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교육발전보조금 1억(시 공모사업 추진)

6. 협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특이사항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양 효 정(☎749-6753)
	교육지원팀장	조 명 임(☎749-6761)	
	주무관	장 은 선(☎749-6766)	

참 고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

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채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 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